

# 환경법규

환경부공고 제2014-510호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2014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관리제만을 고려한 기준 지침을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과 양 제도에 공통 적용할 규정을 구분하여 필요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배출권이 금적전 가치를 지니게 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관련 규정을 개선 · 보완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침의 체계 개편(전체)

- 1) 기존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88호)을 ‘제1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함  
-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

#### 나. 검증 관련 지침의 개정(제5장 및 제9장)

- 1) ‘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 ‘제1편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해당부분을 준용하도록 함

#### 다.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제86조 및 별표14 신설)

- 1)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 시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시

#### 라. 관리업체의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 방법론의 사용 가능 명시(제87조 제2항 및 제87조 제3항 신설)

- 1)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기준 지침에서는 별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간 혼선이 발생함)
- 2) 지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마.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 · 통보 절차 별표 신설(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별표 17 신설)

- 1) 기존 지침의 제47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고유 배출계수 사용 가능 여부 통보 조항은 절차의 단계가 많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별표로 별도 신설하고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는 신설된 별표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함

바. 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제95조 개정)

- 1) 열병합 발전시설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에서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열(스팀) 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

사. 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제97조 신설)

- 1)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공급받는 관리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

아.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제99조 및 별표29, 별지15 신설)

- 1)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원칙 및 방법,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기준 이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

자.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별표13 및 별표16 개정)

- 1)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
- 2)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

차.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별표15 개정)

- 1) 최초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결정 방법을 명시
- 2) 직전년도 배출량과 직적년도 포함 3개년 배출량 평균값 중 높은 값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시 간적 기준을 명확화
-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예상배출량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 4)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산정등급의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보조연료 등에 대한 차하위 산정등급 사용 기준을 마련

카.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8 개정)

- 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별표 내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

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6 개정)

- 1) 산정 공식의 명확화(함량을 질량분율로 수정, 배출계수 단순화, 유효숫자 및 단위 통일)
- 2)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non-CO<sub>2</sub> 산화계수 적용 오류, 단순 오기 등)

파. 연료별 발열량 및 배출계수 용어 등 수정(별표20~21 개정)

- 1) IPCC 가이드라인의 연료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료명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명시
- 2)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의 천연가스액, 갈탄의 정의를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 용어로 수정

하. 기타(별표19, 23 개정)

- 1) 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 내용을 명확화(별표19)
- 2) 관리업체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을 추가(별표23)